

# 정 관

2022. 9

(사)한국건축재활용사업공제조합

# 정 관

제정 2022. 9. 23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법인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”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이라 하며, 영문으로는 “Korea Construction Materials Recycling Cooperative”(약칭 “KCRC”)로 표기한다.

**제2조(설립근거)** 조합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이며, 「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서,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.

**제3조(목적)** 조합은 건축토목용 제품의 자원순환성 향상 및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및 국가탄소중립에 기여하고,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·포장재의 제조·수입·판매업자(이하 “재활용의무생산자”라 한다) 및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환경부장관과 회수·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제조·수입업자(이하 “자발적협약체결 생산자”라 한다)의 회수·재활용의무를 대행한다.

**제4조(사무소)** 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, 필요에 따라 그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**제5조(광고)** 조합의 광고는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 일간지 등 다른 언론매체를 통하여 게재한다.

## 제2장 사 업

**제6조(사업)** 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해당품목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·재활용의무 대행 및 이를 위한 제반 사업(이하 “재활용공제사업”이라 한다)

2. 해당품목 자발적협약체결생산자의 회수·재활용의무 대행 및 이를 위한 제반 사업 (이하 “자발적협약대행사업”이라 한다)
3. 회수·재활용공제사업 및 자발적협약대행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
4. 건축토목용 제품의 자원순환성 향상 및 해당 제품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·조사·기술개발 및 이와 관련한 지원사업
5. 건축토목용 제품의 제조·수입 및 폐기물의 발생·회수·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통계 작성
6. 건축토목용 제품 폐기물의 회수·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
7. 건축토목용 제품의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·홍보 활동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·협력
8. 건축토목용 제품 폐기물의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
9. 정부 및 유관단체, 환경단체 등과의 대외 협력
10.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관련 사업
11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
12. 기타 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 및 회원사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

**제7조(재활용공제사업 등)** ① 조합은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공제사업 참여 및 재활용의무 대행을 위한 비용(이하 “분담금”이라 한다) 납부를 확인하는 참여약정서를 제출받고, 재활용공제사업 수행을 위해 재활용의무량에 대하여 분담금을 부과한다.

② 조합은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의 재활용의무량 달성을 위하여 회수·재활용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자(이하 “재활용사업자”라 한다)에게 적법한 회수·재활용실적에 대하여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분담금의 산정, 납부, 공제 처리 및 재활용지원금의 산정, 지급, 정산,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 등 재활용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④ 자발적협약대행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3장 회 원

**제8조(회원의 종류 및 가입)** ① 조합의 회원은 공제회원, 개별이행회원, 협약회원, 일반 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
② 각 회원별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제회원 : 재활용공제사업에 참여하여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한다.
2. 개별이행회원 :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한다.
3. 협약회원 : 자발적협약대행사업에 참여하여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발적협약 체결생산자로 한다.
4. 일반회원 : 재활용의무대상품목 또는 자발적협약체결품목의 재활용사업자로 한다.
5. 특별회원 :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참여를 희망하고, 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, 법인, 단체, 기관, 학회 등으로 한다.

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, 회원의 가입기준 및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9조(회원의 권리)** ① 회원은 조합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조합 운영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② 회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.

**제10조(회원의 의무)**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, 조합의 정관 및 제 규정 등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
3. 조합의 사업 추진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
4. 분담금 등 회원에게 부과되는 제비용의 납부
5. 제13조에 따른 신고

② 공제회원, 개별이행회원, 협약회원은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, 출고·수입실적서 등 분담금 산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일반회원은 재활용목표 등 조합과의 위수탁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, 회수·재활용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회원 탈퇴)**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탈퇴되며, 제5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을 때
2.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
3.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
4. 폐업했을 때
5. 회원이 스스로 탈퇴하고자 할 때

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, 조합은 해당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.

1. 제40조에 따른 분담금 및 가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
2. 제10조제2항에 따른 출고·수입실적서를 조합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
3. 재활용실적자료의 허위 제출, 고의 미제출 등 부정·불법적인 행위를 확인한 때
4. 조합과의 연락두절 등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때
5. 법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,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상실한다.

**제12조(회원 제명)**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, 조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.

1. 조합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2.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
3. 조합의 목적 수행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을 때
4. 조합의 명예 훼손 또는 재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

② 회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전 해당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 서면 등으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명된 회원에게 해당 제명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, 이 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상실한다.

**제13조(신고)**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대표자, 상호 또는 사업장(주소)을 변경하였을 때
2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, 폐업하였을 때
3.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4. 기타 조합의 필요에 의하여 신고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

②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다.

## 제4장 사 원

**제14조(사원의 자격)** ① 조합의 사원은 제8조에 따른 공제회원 및 협약회원 중에서 분담금 납부액, 재활용의무대상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.

②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, 사원의 총수는 50인 이내로 한다.

③ 사원으로 선임된 자는 별도로 정한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사원의 권리)** ① 사원은 조합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사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.

**제16조(사원의 의무)** ①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, 조합의 정관 및 제 규정 등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
3. 조합의 사업 추진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
4. 제13조에 따른 신고

② 사원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의 설립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.

**제17조(사원의 자격상실)** ① 사원이 제11조에 따른 회원 탈퇴 또는 제12조에 따른 회원 제명되는 때에는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.

② 사원이 본인 의사에 따라 사원에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에 사임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임할 수 있다.

③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권리 및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모두 상실한다. 다만,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한다.

**제18조(회원 규정의 준용)** 사원에 관한 탈퇴 및 제명,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5장 임 원 및 직 원

**제19조(임원 구성)** ①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이사와 1인의 감사로 하며,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.

② 임원 중에서 이사장 1인은 상근직으로 하고,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직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,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근직 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.

③ 조합의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임하고, 등기를 완료한 후 주무관청(환경부)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임원의 선임)** ①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.

② 제19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상근직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임원의 선임시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보선한다.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5. 환경부장관의 취임승인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.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재활용사업자의 대표자, 소속임원, 지배주주에 해당되는 자
8.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의 특수 관계인(친계 8촌, 모계 4촌 이내)에 해당되는 자

**제21조(임원의 해임)**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관련법령, 정관,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
2. 조합에 대하여 현저한 부정행위를 하였거나,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3. 임원 간의 분쟁, 회계부정,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으로 조합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키거나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
4.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

**제22조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 다만,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③ 상근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집행·관리한다.
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조합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조합의 재산상황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



4.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

5.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

**제23조(임원의 임기)**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선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장 및 상근이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총회는 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24조(임원의 보수)** ①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근이사를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이사장과 상근이사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
**제25조(직원 및 직제 등)** ①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제를 마련하고, 직원을 채용하며,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직제, 직원의 정원 및 보수, 복무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③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품목별 또는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26조(임직원 겸직제한)** ① 조합의 상근 임원과 직원은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② 조합의 모든 임직원은 조합과 계약된 재할용사업자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 사업자로부터 직·간접적인 지원 또는 보수를 받는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.

## 제6장 총회

**제27조(총회 구성)**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,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, 사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28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**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.
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.

1. 이사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
3. 조합 사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때
4.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**제29조(총회 소집절차)** ① 이사장은 총회의 소집일시,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② 이사장의 유고나 궐위 등으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30조(총회 의결사항)**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조합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2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(단, 이사장 및 상근이사는 제외한다.)
3. 사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
5.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6.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
7.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

② 제1항제4호의 의결시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결할 수 있다.

**제31조(총회 의결방법)** ① 총회는 재적 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 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정관의 개정 및 해산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사원이 행사한다. 다만,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은 대리인의 출석 또는 서면의견 제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대리인 출석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32조(총회 참여제한)** ① 의장 또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
2.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, 임시의장을 호선한다.

**제33조(총회 의사록)**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사원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.

1. 개최일자 및 장소
2. 출석자 수
3. 의사경과와 결과

## 제7장 이 사 회

**제34조(이사회 구성)**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**제35조(이사회 소집)**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.
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때
3.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, 부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36조(이사회 의결사항)**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총회에 부의할 사항
2. 사업계획 수립,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사원의 선임 및 사원·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

4.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5. 결원이 생긴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
6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7. 대여 및 차입자금 운영, 세계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
8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9.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
10. 기타 조합의 운영상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

**제37조(이사회 의결방법)**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38조(이사회 참여제한)** ①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
2.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본인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, 임시의장을 호선한다.

**제39조(이사회 의사록)** 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.

1. 개최일자 및 장소
2. 출석자 수
3. 의사경과와 결과

## 제8장 분 담 금 등

**제40조(분담금)** ① 조합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자발적협약체결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한다.

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자발적협약체결생산자별 분담금은 제43조에 따른 비용산정위원회가 결정한 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되, 재활용의무를 미이행하여 발생하는 재활용부과금(자발적협약의 경우 미이행부과금)의 납부에 대비하여 이를 분담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분담금과 관련한 회계는 재활용의무대상품목별로 관리하며,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④ 조합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자발적협약체결생산자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⑤ 분담금과 가산금의 산출, 부과·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41조(분담금의 양도·양수 금지)** 분담금은 양도·양수하거나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자발적협약체결생산자의 채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**제42조(재활용부과금 납부)** ① 조합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 받거나, 해산 또는 파산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, 해당품목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공제회원은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.

② 제1항의 재활용부과금은 해당품목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점유율로 배분하여 산정한다.

③ 자발적협약체결생산자인 협약회원의 미이행부과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.

**제43조(비용산정위원회)** ① 조합은 재활용공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활용의무대상품목별로 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② 비용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재활용의무대상품목별 분담금 산정기준 및 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
2. 재활용의무대상품목별 재활용지원금 산정기준 및 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재활용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조정 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③ 비용산정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분담금 단가 및 재활용지원금 단가 결정에 대하여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비용산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비용산정위원회는 외부전문가, 재활용의무생산자, 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는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.

⑤ 비용산정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, 재활용의무대상품목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⑥ 비용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기준 및 방법,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9장 재 산 및 회 계

**제44조(재산의 구분 및 관리)** ① 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[별지1]과 같다.

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.

④ 조합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하고자 할 때, 담보제공 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, 또는 장기차입이나 권리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45조(재원)** 조합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각종 분담금

2. 가입비 및 회비

3. 기부금 또는 보조금

4. 회원사가 위임한 사업에 대한 수수료

5.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

6. 사업에 수반된 수입

7. 기타 수익금

**제46조(수익사업)** ① 조합은 제6조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수익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별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.

③ 수익사업의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다.

**제47조(회계 원칙)** ① 조합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**제48조(회계 운용)** ① 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며,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「법인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**제49조(회계연도)**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
**제50조(세계잉여금)** 조합은 세계잉여금(수지결산차액)이 발생한 경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적립 관리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
**제51조(예산 및 결산)** 조합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52조(회계감사)** 조합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한다.

## 제10장 해 산

**제53조(해산)**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산한다.

1. 총회에서 해산 의결
2. 조합의 파산
3. 기타 해산사유 발생

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54조(청산인)** 조합 해산 시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.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.

**제55조(잔여자산의 처분)** 조합의 해산 시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자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로 귀속한다.

## 제11장 보 칙

**제56조(회비 등의 미반환)** 조합은 사원 또는 회원이 탈퇴 및 제명 등으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가입비, 회비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.

**제57조(업무보고)** 조합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와 다음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58조(표창)** 이사장은 조합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**제59조(운영규정)**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60조(경미한 변경)**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1. 법령 개정 등 상위 규정 개정 등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
2. 각종 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양식의 제·개정
3. 각종 규정 중 내용의 변경이 없는 문구의 수정
4. 각종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

**제61조(준용규정)** 이 정관이나 조합의 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**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[별지2]와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**제3조(주사무소)** 최초의 주사무소는 [별지3]과 같다.

2022년 9월 23일

사단법인 한국건축재활용사업공제조합